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본금”을 “자본금 또는 자기자본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(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인프라가 없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·이용·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출의
무 이행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별 첨 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4조(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)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"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"란 <u>자본금이</u> 1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 ~ ⑥ (생략)</p> <p>제30조(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) ① 신용정보회사 등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사항(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32조제7항 단서에 따</p>	<p>제14조(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자본금 또는 자기자본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0조(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 따라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: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하는 방법

가. ~ 라. (생략)

2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④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"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

-----.

1. -----

----- 경우(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인프라가 없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·이용·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-----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2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1. ~ 5. (생략)

<신설>

⑤ ~ ⑨ (생략)

-----.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이행

⑤ ~ ⑨ (현행과 같음)